

마곡 기업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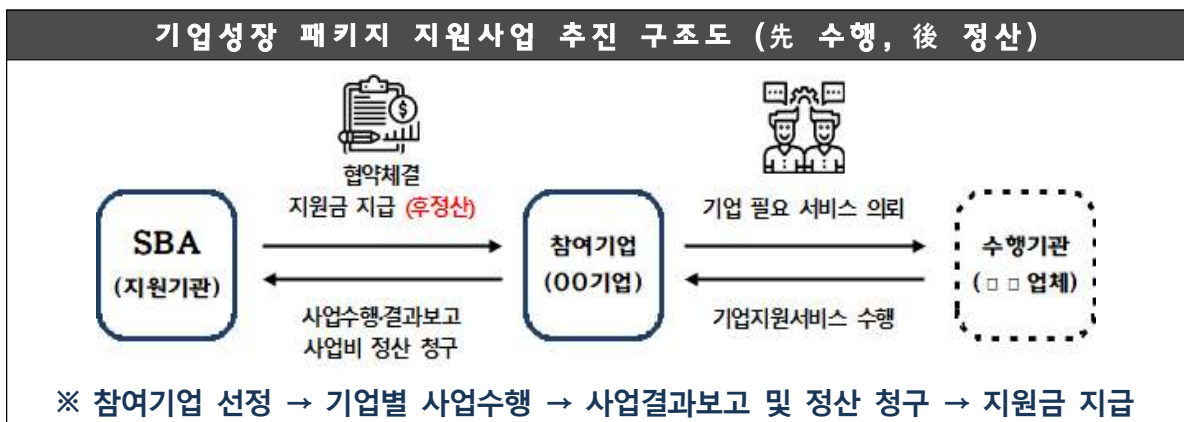
마곡지구 활성화 및 입주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마곡 기업성장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입주기업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 04.

마곡산업단지관리단 기업지원 협력기관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마곡 기업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 사업목적
 -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업지원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바우처형식의 지원을 통해 입주 중소기업 성장 유도 및 글로벌 역량 강화에 기여
- 모집규모 : 22개사 ※ 기업 수요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금액 : 기업 당 최대 1,000만원 (先 수행, 後 정산지급)
 - 부가세 및 환급 가능 비용 제외 지원, 기업부담금(현금) 10% 이상 구성 필수
 -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세부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하는 기업지원 서비스 항목을 선택하여 기업 맞춤형 기업성장 패키지를 구성, 지원 한도 내 사업 수행 비용 지원
- 자율적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추진 (결과보고 시 수행기관 증빙제출)
- 세부지원내용 [붙임1]참고

신청분야		내용
기업성장 기반구축	지식재산권 권리화	국내·해외(PCT) 특허출원, 디자인·상표·실용신안 출원 비용
	R&D 컨설팅	정부 R&D 과제 사업계획서 등 R&D 기획 관련 컨설팅
	기획·조사	연관 특허권 분석, 기술동향 조사 및 분석
	시제품 제작	금형, 설계 등 시제품 제작 관련 비용
	투자유치지원	기업가치평가, IR자료 제작, IPO컨설팅 등
글로벌 기업 도약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 비용 지원
	해외 영업	해외 시장조사,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
	통·번역	해외 수출관련 통·번역 비용 지원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국내외 공인 인증 획득
	IP전략 컨설팅	해외 지재권 분쟁 관련 컨설팅
기업 경쟁력 강화	브랜드	브랜드 개발 및 관리, CI 및 BI 개발, 브랜딩 전략 수립
	홍보 및 광고	국내외 홍보 자료 제작
	디자인	제품 및 시각디자인 개발
	기업 컨설팅	기업 진단 및 전략 컨설팅
	인재 채용	신규전문 인력 채용 지원(헤드헌팅 비용, 채용사이트 이용료 등)
	인재 교육	내부 인력 교육 비용(단체 교육에 한함)

※ 지원기업은 지원금 비용 내에서 **복수 서비스 사용 가능**

※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업수행의 경우, 사업계획서 적격심사를 통해 지원가능 여부 결정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마곡지구 입주 중소기업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지 必)

□ 자격요건 : 마곡지구 내 기업소재지가 등록된 입주기업

- 마곡산업단지 필지 분양 계약 완료 및 입주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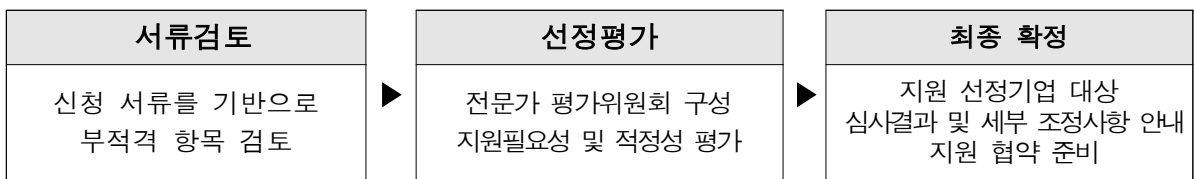
- 마곡지구 상업·업무 용지 내 입주기업

3. 지원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이메일 제출 (magokbiz@sba.seoul.kr)	
↓		
선정평가	○ 서류검토 (제출서류 구비여부, 지원대상 적격 여부 등) ○ 전문가 심사평가 (지원필요성, 추진의지, 기대효과 등)	
↓		
참여기업 선정	○ 최종 선정 결과 통보 ○ 지원사업 협약 추진 안내	
↓		
협약 체결	○ 양자 협약 체결 (최종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		
지원사업 수행	○ 최종 사업계획서 기반 개별 기업지원서비스 활용 ○ 중간점검 간담회 (사업수행 모니터링 및 기업 간 교류)	
↓		
결과보고 (지원기업→SBA)	○ 지정 회계법인 위탁정산 시행 ○ 사업수행 완료 15일 이내 결과보고 (결과보고서 및 정산 감사보고서, 증빙서류 일괄 제출)	~ 11/15
↓		
지급정산 (SBA→지원기업)	○ 결과보고 기반 기업지원금 정산	매월 말일 / ~11/30

4. 선정심사

□ 선정심사 절차



□ 평가항목 [붙임4]

- 신청분야 적합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예산 적정성 등 종합평가
- 가산점 우대사항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사회적기업 등

□ 지원 선정 여부 안내

- 선정기업 대상 지원사업 수행 및 정산 등 관련 상세 안내
 - ※ 지원기업 선정 후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외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 선정심사 전문가 의견 및 지원내용 조정 항목에 대한 개별 통보 진행

5. 기타 유의사항

□ 지원 제외기업

- 지원대상 외 기업 (마곡동 이외 소재 또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
- 신청기업의 지원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 지원신청 시 지원신청서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채무불이행으로 신용기관에 등재되어 있는 기업
-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 지원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동일 사업내용으로 타기관 기지원 또는 지원 예정인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사업수행 조건

- 사업수행완료 후 15일 내 결과보고(양식별첨) 및 증빙자료제출 (~11/15)
 - ▶ 11월 사업수행기업은 완료 후 1주일 이내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 ※ 선정 후 협약체결 기업 대상 결과보고서 양식 및 제출서류 별도 안내
 - ※ 증빙자료 : 계약서,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영수증, 입금내역, 결과물 등
- 지원기업은 반드시 SBA가 승인한 지원신청서에 근거하여 사업 수행
- 선정 후 부득이 신청내용 변경필요시 사전 공문 제출 및 승인 필수
- 선정 후 취소기업은 추후 동일사업 신청시 불이익 부여

□ 기타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6. 사업접수 및 문의

신청기간 : 2019. 3월 중 ~

공고게시 : 서울산업진흥원(SBA) 홈페이지 (www.sba.seoul.kr)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방법

- ①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sba.seoul.kr) 회원가입 진행
- ②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사업신청 메뉴 선택
- ③ 『2019년 마곡 기업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게시 확인
- ④ 공고문 확인 및 첨부문서(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사업신청 진행
- ⑤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온라인 일괄 업로드(제출)
- ⑥ 접수 마감 후 심사 진행, 선정기업 대상 개별통보 안내

제출서류

※ 공고문 첨부 서식 활용

No	제출서류명	수량	비고
1	지원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1부	서식1
2	최근 2년간 결산재무재표 (2016-17년)	1부	원본대조필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4	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최근 1개월 이내
5	기업·개인 정보 조회 및 활용 동의서	1부	서식2
6	가산점 증빙서류 (벤처·이노비즈기업 인증 및 지재권 보유 등)	각 1부	원본대조필
-	자유제출 : 기업 또는 주력 상품 소개자료 (<u>필수 아님</u>)	-	파일형식 제출 必

- 1.지원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한글문서 및 날인 후 스캔본(PDF) 각 1부 제출
- 그 외 제출서류 원본 스캔본(PDF형식) 파일 압축 후 하나의 첨부 제출

문의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산업거점기획팀	김현정 선임	02-2222-4216	hjspring@sba.seoul.kr

※ 붙임 목록

[붙임1] 기업 지원 Q&A

[붙임2] 기업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가능 항목 안내

[붙임3] 회계정산수수료 산정 및 절차 안내

[붙임4] 선정심사 기준 및 가산점 우대사항 안내

[붙임5] 사업비 정산 안내

[붙임1] 기업 지원 Q&A

Q 지원가능한 사업분류인지 궁금합니다

⇒ [붙임2] 지원 대상 서비스 항목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내 명기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추진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평가를 통해 지원적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본 사업 목적에 부합되고, 기업지원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면 세부 지원내용 상 명시여부에 제약 없이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가 천만원 이상이어도 되나요?

⇒ 물론 가능합니다.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규모(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단, 천만원 이상 사업을 수행하셔도 SBA지원금은 최대한도 1,00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Q 기업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기업성장 패키지 지원사업은 '先 기업수행 後 정산지급'으로

'사업신청-선정 후 협약체결-기업 개별 사업수행-결과보고-지급정산' 순서에 따라 지원금은 사업수행 완료 후 지급됩니다.

Q 현재 본사는 지방에 있고, 지점 또는 R&D연구센터가 마곡에 입주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마곡 내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경우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및 업태가 있나요?

⇒ 우선적으로 정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본 지원사업은 사무공간을 구비하고 있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 도·소매 유통업 또는 지식서비스·금융 관련 업종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직접 상품 또는 서비스(IT관련)를 연구개발·제조하여 판매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Q 사업비 내 SBA지원금과 기업부담금 배분은 어떻게 하나요?

⇒ SBA지원금 최대 90%: 기업부담금 최소 10% 배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① 총 사업비 : 수행사업 소요비용 총액 - 부가세 및 지원불가 항목 비용 제외
- ② 사업비배분 : 총사업비 中 SBA지원금 최대 90% : 기업부담금 최소 10%
- ③ SBA지원금 내 회계정산수수료 전액 편성
- ④ 산출된 SBA지원금 총액에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 지원
SBA지원금 산출금액 중 1,000만원 초과분은 기업부담금 편성

사업비 예시

총 사업비 = ①SBA기업지원금(회계정산수수료 포함) + ②기업부담금

▶ A기업

- ① 사업수행 : 브로셔번역(450만원)+제품패키지 개발(300만원)+홈페이지 보완(330만원) = 총사업비 1,080만원
- ② 회계정산 : ①SBA지원금(972만원+회계정산수수료 46만원=1,018만원) + ②기업부담금(108만원)
- ③ 최종 정산지급액 : ①SBA지원금 최대 1,000만원 + ②기업부담금 126만원(11%)

▶ B기업

- ① 사업수행 : 해외전시회 참가(1,700만원) = 총사업비 1,700만원
- ② 회계정산 : ①SBA지원금(1,530만원+회계정산수수료 46만원=1,576만원) + ②기업부담금(170만원)
- ③ 최종 정산지급액 : ①SBA지원금 최대 1,000만원 + ②기업부담금 746만원(44%)

▶ C기업

- ① 사업수행 : 국내특허출원(130만원) + 온라인 채용포털(450만원) = 총사업비 580만원
- ② 회계정산 : ①SBA지원금(522만원+회계정산수수료 46만원=568만원) + 기업부담금(58만원)
- ③ 최종 정산지급액 : ①SBA지원금 568만원 + ②기업부담금 58만원(10%)

※ 회계정산수수료의 경우, 총사업비 규모 및 참여기관 수에 따라 상이함 (붙임2 참고)

Q 지원선정 후 기업이 다른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유지되나요?

⇒ 지원기간(~2019.12.31) 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선정은 자동 취소되며, 이전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Q 사업계획서 제출 후 사업내용 변경이 가능한가요?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하신 경우,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SBA 사업 담당자에게 사전 안내를 진행하신 뒤 변경 사유 및 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시어 SBA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신 뒤 승인 받으시면 됩니다.
(변경 공문 검토 후 승인 또는 미승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붙임2] 기업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지원 가능 항목 안내

1. 지원 대상 서비스 항목 ※명기되지 않은 내용의 경우,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결정

연번	대분류	정의	내용(예시)
1	R&D기획 및 조사 컨설팅	정부 및 지자체 R&D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단계 연관 서비스	연관 특허권 및 기술 사전 조사·분석, 과제 사업계획서 작성 등 기획 관련 컨설팅 R&D관련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유사 서비스
2	지식재산권 권리화, 국내외 시험 및 규격인증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및 인증 대행 등	지식재산권 출원 및 IP 전략 컨설팅, 분쟁 지원 등, 시험 및 규격 인증 획득 컨설팅 및 인증·시험 비용 등 특허·지재권·시험 관련 분야 전반 연관 서비스
3	시제품 제작	기술개발 구체화 지원	금형, 설계 등 시제품 제작 관련 서비스
4	투자 유치 지원	기업 외부자원 유치 지원	기업가치평가, IR자료 제작, IPO컨설팅 등
5	해외전시회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관련 제반비용 지원	해외 인증 전시회 부스비 및 장치비, 운송비 등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분야 전반 연관 서비스
6	조사·일반 컨설팅	정보 조사 및 기업경영 연관 컨설팅 지원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해외 기업 신용 및 기업실태 조사, 바이어DB 타겟마케팅, 기업 중장기 성장전략수립, 해외진출 및 기업경영 조사·일반 컨설팅 분야 연관 서비스
7	통번역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지원	계약법률 문서, 소프트웨어콘텐츠, 게임·모바일앱 콘텐츠, 비즈니스·기술문서, 홈페이지 번역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연관 서비스 * 단, 통·번역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함
8	해외영업	해외진출 관련 필요 지원	계약서 및 통관·선적 필요 서류 작성 등 서류 대행,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보험 등 수출보험료, 해외 통관 등 수출관련 법률 자문료 등 연관 서비스
9	브랜드	브랜드 개발·관리 지원	신규 브랜드 개발·관리, 브랜딩 전략 수립 컨설팅, CI 및 BI 개발, 네이팅 등 브랜드 관리 전반 연관 서비스
10	홍보·광고	기업·제품·브랜드 홍보 및 광고 지원	온·오프라인 광고 및 홍보물 제작비, 바이럴마케팅, 홍보매체 운영비(홈페이지, SNS 등) 등 광고매체 활용 연관 서비스
11	디자인	디자인 개발 지원	제품 및 시각(포장) 디자인 개발비 등 일러스트 작업이 수행되는 디자인 연관 서비스
12	인재채용	기업 필요 인력 총원 관련 서비스 이용 지원	신규 및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취업포털 이용, 헤드헌팅, 오프라인 채용 지원 참가(박람회 등) 등 연관 서비스
13	직원역량교육	내부 인력 교육 지원	실무지원(정보처리, 빅데이터 분석, 전략수립 등), 글로벌인재양성(해외시장 분석, 무역실무 등) 등 종사 자 역량강화 교육 분야 전반 연관 서비스

2.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393개)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미국 (72)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학회)	ASME (미국기계학회)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ADR (공기정화률인증)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IA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CTI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ermatest (화학제품인피자극성등급인증)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DOT (미국운수성)
	Energy Star (미국에너지스타)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ETL (미국전기시험연구소)	FCC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품국)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FedRAMP (미국클라우드보안인증서비스)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IPS (연방정보처리표준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reen Seal (친환경인증)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GSA (미국연방조달청)
	HIRF (고강도전자기장)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810G (미국육군장비규격)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 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NFRC (창호단열규정)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미국위생도기규격)	NR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 부품수리인증)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ARL,BACL,CSA,CSL,FM,IAPMO, ITSNA,MET,NNA,NSF,QAI,QPS, SGS,SWRI,TUVNorth,TUVPTL, TUVSUD,TUVPSG,UL 19개기관)
	PTCRB (북미휴대폰인증)	SCS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L CAP (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미국농무성환경인증)	Water Sense (미국환경보호국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유럽 (29)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NR (라인강항해중양위원회인증)	CE (유럽공동체마크)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CPNP (유럽화장품등록)	Eco-Labeling (EU환경마크)	ECO-PASSPORT (섬유제조공정인증)
	EFSA (유럽식품안전청)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ESV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U 2092/91 (EU의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셀)	FIBC (산업용포장재의정전분류)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ovel Food (신규식품과신규식품 첨가제에대한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RoHS (유럽유해물질사용제한)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 (3)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반도체RF보안인증)
덴마크 (1)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독일 (14)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L (독일선급협회)	GS (독일품질안전)
	IT-Grundschtz (정보보호인증제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영국 (10)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CPA (상업용제품인증)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LR (영국선급협회)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2)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6)	BV (프랑스선급협회)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F (프랑스의소비자보호및불공정 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GTT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스페인 (3)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AENOR (스페인규격협회)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SP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협회)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 (1)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일본 (28)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F☆☆☆☆ (일본친환경규격)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F-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CMVP (암호모듈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HOSPA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ISEC (IT시큐리티평가및인증)
	JPAL (일본의료기기)	JWWA (일본상수도협회)	MPHPT (일본우정통신성)
	NK (일본선급협회)	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	PSC (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ECO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 MIC, JATE, TELEC 등)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위생허가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러시아 (10) (신남방)	CU (러시아강제인증)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Fire Protection Certificate 소방안전증명서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 질관리 및 위생안전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CertificateofMedic alDevices)		
말레이시아 (3) (신남방)	DOSH (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 (3)	CO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대만 (5)	ART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BSMI (대만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TFDA (대만의료기기)	
태국 (2) (신남방)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태국 식약청	
브라질 (4)	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사우디아라비아 (1)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터키 (1)	TSE (터키강제인증)		
싱가포르 (8) (신남방)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CPS (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Data Protection Trustmark (데이터보호표준및적합성인증)
	HAS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MTCS (클라우드보안인증)	NITES (NITES보안인증)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아르헨티나 (2)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 (14) (신남방)	ARAI (인도자동차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DSCO (인도약품표준통제국)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RS (인도전자제품강제등록제도)	DCG (인도식약청)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RDSO (인도철도인증)	STQC (인도생체인식장치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WPC (인도통신기기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인도네시아 (3) (신남방)	B 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39)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IS (네트워크핵심설비및사이버보 안전용품안전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hina MSDS (중국물질안전보건자료)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China RoHS (중국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GB TEST (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MOH (중국수입식품수관련 안전제품위생허가)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NEPSI (중국방폭관련인증)	NIM (중국계량과학원)	SAMR (구.CFDA-중국 보건식품 허가등록)
	NMPA (구.CFDA-중국 의료기기 허가등록)	NMPA (구.CFDA-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건설산업과학기술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	신식품원료허가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성과평가인증		(신식품원료및첨가제허가)
	중국 비료 허가	중국 소독제 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중국자율제품인증 (CQC, CVC등)	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 (1) (신북방)	GOST-K (카자흐스탄인증)		
중동 (1)	GCC (중동적합성마크)		
캐나다 (9)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SA STAR (클라우드서비스인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ISO/IEC 27018 (개인식별정보보호안통제)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 (1)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콜롬비아 (1)	RETIE (변압기강제인증)		
폴란드 (1)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4) (신남방)	ERC (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PEFC (필리핀산림제품인증)
	PFDA (필리핀식품의약청)		
라오스 (1) (신남방)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4) (신남방)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베트남 식품 인허가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보건부의약청화장품등록		
호주 (15)	APEC CBPR (APEC개인정보보호인증)	ACE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전및배기량규격)	AGA (가스안전인증-호주)	AISEP (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AS (호주규격협회)	A-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유선)	Code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건축자재인증)
	C-Tick (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무선)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홍콩 (1)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1)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1)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 독립통신위원회)		
이란 (3)	CRA (무선통신기기인증)	ISIRI (이란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나이지리아	SONCAP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1)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에미 레이트 (3)	ECAS (전자기기인증제도)	EQM (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G-Mark (GSO통합인증)
이스라엘 (1)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국제 (69)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 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 확보목적의인증)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승인규격)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 위치정보제품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FAIRTRADE (국제공정무역마크)	FIFA IMS (International Match Standard)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FSC (국제산림관리협회의)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GRS (국제재생섬유친환경인증마크)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신남방)	HDMI (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LO (국제노동기구)
	IPA (클린룸인증)	ISO 27017 (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ISO 3834 (용접ISO인증)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ISO 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코트제 품인증)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FPA1971 (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규격)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미사용인증마크)
	OCS (유기농섬유인증)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R&A Certificate (골프공공인구)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INCERT (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TCO05	The Skin Cancer Foundation's	Toxproof	

국가별 (지원건수)	규격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USB-IF (USB표준규격)	WHO (세계보건기구)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 * 위 지원대상이 아닌 규격인증은 “기타규격 인증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www.osha.gov/dts/otpca/nrtl/>)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17개 기관이 인정을 받음 (NRTL인정 17개기관: CSA, CSL, FM, IAPMO, ITSNA, MET, CCL, NSF, QAI, QPS, SGS, SWRI, TUV, TUVPTL, TUVAM, TUVPSG, UL)
- * RoHS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WEEE(폐가전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붙임3] 회계정산수수료 산정 및 절차 안내

□ 사업 수행 완료 후 지정 회계법인 위탁 정산 시행

- 추진 사업이 종료될 시 자체 정산을 실시한 후,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위탁정산 실시
- SBA에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신청 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必

□ 정산 내용

- (사업비 정산) 사업비 사용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
- (회계 감사) 사업계획서 및 지출증빙 서류 일치 여부·적합성 등 감사

□ 회계정산수수료 산정표

(부가세 포함 금액)

사업비 규모	정산수수료 표준액
~5천만원 미만	46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7만원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73만원

□ 지정 회계법인 안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이산회계법인	이태호	02-2028-7370 010-5285-2892	thlee@kicpa.or.kr

※ 회계정산관련 문의는 상기 지정회계법인을 통해 진행

[붙임4] 선정심사 기준 및 가산점 우대사항 안내

1. 선정심사 기준표

구분	평가기준	평가비중
사업취지 부합성 및 지원 필요성 (60)	지원사업 목적 부합성	10
	지원사업의 필요성	20
	사업 추진계획의 구체성	20
	추진계획 예산의 적정성	20
사업현실성 및 지원 효과성 (40)	추진계획 실현 가능성(최종 성과물 산출 가능성)	20
	추진 계획의 기대효과	10
가산점 우대사항	벤처기업 · 이노비즈기업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	(+최대 5점)
총 계		100 (+5)

2. 가산점 우대사항 (최대 5점 부여)

가산점 부여 항목	배 점
벤처기업	1점
이노비즈기업	1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점
여성기업	1점
사회적기업	1점
장애인기업	1점
국내 지식재산권 보유	등록 1건당 1점 부여 = 최대 3점

[붙임5] 사업비 정산 안내

- 지원 협약서 내 명기된 정산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비 정산 실시
 - 사업 신청 후 지원기업을 선정, 해당 기업과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양자협약 체결
 - 사업운영 및 정산 기준이 명기된 협약서에 근거하여 사업 수행 및 정산 청구

- 사업비 정산 시 준수사항
 - 선정기업은 지원사업 구성 및 사업비 배분은 자율적으로 하되, 부가세 및 기타 환급가능 수수료를 제외한 총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 최소 10%이상 구성해야 함
 - 회계정산수수료는 SBA지원금에 전액 편성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정산 관련 조정 및 변경은 반드시 SBA 사전 승인 후 진행

- 지원금 청구 및 지급 안내
 - ① 기업별 사업수행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정회계법인을 통한 위탁정산 시행, 지원금 청구 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② 선정기업은 사업수행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SBA에 제출 서류를 구비하여 지원금 청구
 - 마곡 기업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정산서
 - 사업비 집행 관련 회계감사보고서
 - 사업비 정산 증빙서류 사본(대표자 원본 대조필)
 - 수행기관(세부 기업지원 서비스 수행한 기관) 증빙서류
 - 일부 기업지원서비스(지재권 권리화, 해외박람회 참가 등)의 경우 별도 증빙양식 제출(협약 후 안내)
 - ③ SBA는 제출 서류 확인·검토 후 지원금 지급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지원금액을 확정, 지급
 - 사업 내용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여부
 - 세부 기업지원 서비스 결과물 및 지출근거서류의 이상 유무
 - 세부 기업지원 서비스별 지원금 청구액 확인(기업부담금을 제외한 지원금)
 - 기 제출·승인된 사업계획서 상 추진계획 일치여부
 - ④ 선정기업의 추진 사업이 협약기간 내 완료되는 경우에만 지원금 청구 가능
(협약 기간 종료 수 성과물이 나오는 경우, 청구 불가)
 - ⑤ 선정기업은 사업비 사용·관리 관련 자료제출 요청시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음
 - ⑥ 매월 말일 사업 결과보고 및 지원금 정산 검토가 완료된 기업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